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000 (농림축산식품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거래 시 신고하도록 하고,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(법률 제18688호, 2022. 1. 4.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및 업무위탁 규정 마련
(안 제9조 개정)

- 농업기계해체재활용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·업무정지 명령 및 처분 현황의 기록·관리 등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(안 제9조 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신설)
- *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청문과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
-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해 농림사업 정보시스템(AGRIX)운영기관인 농정원에 위탁(제9조제3항 신설)

나.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안 [별표] 2. 개별기준 개정)

-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미 이행시 법제처의 과태료 부과기준*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

*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(법제지원총괄과-279호, 2021.6.2.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6호의2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자의 지정

3의2. 법 제9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자의 지정 취소·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·업무정지 처분현황의 기록·관리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를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.

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	500	750	1,000

	제1호			
나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2	500	750	1,000
다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· 유통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2호	500	750	1,000
라. 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 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3호	500	750	1,000
마.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4호	500	750	1,000
바.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 를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5호	500	750	1,000
사.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6호	500	750	1,000
아. 법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 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7호	500	750	1,000
자.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사실 확인서 류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8호	500	750	1,000
차. 법 제9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 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9호	500	750	1,000
카.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 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·보 관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10호	500	750	1,000
타.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11호	500	750	1,000
파. 법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 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12호	500	750	1,000
하. 법 제9조의8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 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(반품된 농업기계 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)을 구매자에게 고지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13호	500	750	1,000
거. 법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 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제3항 제1호	50	75	100
너. 법 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 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제3항 제2호	50	75	100
더.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·	법 제19조제3항	50	75	100

보관하지 아니한 경우	제3호			
러. 법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제3항 제4호	50	75	100
며.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9조제3항 제1호	25	50	100
버.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1)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시정 2)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정 3) 시정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3항 제2호	25 50 100		
서.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	200	300	500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9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자의 지정</u>
<u><신 설></u>	3의2. <u>법 제9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자의 지정 취소·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·업무정지 처분현황의 기록·관리</u>
3. ~ 7. (생 략)	4. ~ 8. (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를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896